



Grant Thornton

An instinct for growth™

조세에 대한 법규 각 新문서와 일부 중요정책업의 데이트

2018년 11월

1호





콘텐츠

이런 문서중에,우리 Grant Thornton Việt Nam주는 최근 일부 새로운 법규문서와 조세에 대한 중요 정책 안내들을 고객님에게 업데이트 해드리겠다. 다음:

- 1.외국 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을 규정하는 정부 의령서 제143/2018/NĐ-CP호.
- 2.노동허가서 발급에 대한 여러규정의 변경 의령서 제140/2018/NĐ-CP호.
- 3.국민 교육 시스템에 속하는 각 교육장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문서16/2018/TT-BGDĐT 호.
- 4.국내 판매상품의 입구VAT는 수출품의 VAT와 누계해서 환세신청의 불가능.
- 5.수출품을 만든수입물건들을 국내기업에 상품을 인계해준 지정(제자리 수출)을 하게 되면 수입원료의 면세 불가능.
- 6.기업은 할부구입 고객을 대신해서 차입이자의 지급항목에 대한 송장의 발급.
- 7.외국투자기업 (“FDI”)은 자기로 생산된 상품을 소매로 판매할때 허가신청의 면제.
- 8.Google/Facebook에 광고할때 공사계약자의 세금을 분리 납세해야 한다.
- 9.외지방 왕내VAT 신고.



1.외국 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을 규정하는 정부 의령서 제143/2018/NĐ-CP호.

2018/10/15일에 정부는 최근 의령서 제143/2018/NĐ-CP호 (의령143)를 발급해서 베트남에 외국의 근로자에 대한사회보험법과 필수 사회보험의 위생, 안전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한다. 본 의령은 2018/12/01일부터 발효한다.

의령143에 따라 외국인들은 베트남 신권기관의 발급된 노동허가서 혹 작업허가서가 있고 기한 미정 노동계약서, 베트남고용자에 대한 1년이상 유효한 노동계약서가 있을때 베트남에 필수적 사회보험가입을 해야 한다.그런면 베트남에 외국인이 노동계약서 1년 이하로 하면 사회보험가입 면제에 속한다.

외국인에 대한 필수 사회보험 납금의과정은 다음 같다:

2018 /12/01일부터 기업은 병가, 출산 자금에 3%의 공제와 노동사고,업중병가의 자금에 0,5%로 공제한다.

2022/01.01일 부터 기업은 퇴직,하사금의 자금에 14%, 외국노동자 라면 8%로 공제한다.

2. 노동허가서 발급에 대한 여러규정의 변경 의령서 제140/2018/NĐ-CP호.

정부는 최근에 의령서 제140/2018/NĐ-CP호. (“의령 140”)를 2018/19/08일에 발급해서 사회,보훈-노동부의 국가관리범위에 속한 영업투자조건과 행정절차에 관련된 각 의령서 를 변경, 보충한다.

의령140에 주목된 중요 변경의 하나는 의령서 11/2016/NĐ-CP에 반영된 외국인에게 노동 허가서 발급조건과 절차에 관련의 각 규정들을 변경한다. 구체로 다음:

- 외국 노동자사용 요구확정을 진행하지않는 경우의 보충으로 대표사무실 장, 베트남 에 국제 각조직의 제안, 비정부의 제안들을 포함한다..
- 외국 노동자가 무역출석의 설립책임자로 하면 노동허가서 발급대상에 속하지 않는 보충을 한다.
- 외국 노동자에게 노동허가서 발급 시간을 근무일의 7일부터 5일로 축소한다.

3. 국민 교육 시스템에 속하는 각 교육장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문서16/2018/TT-BGDĐT.



2018/08/03일, 재정부는 문서16/2018/TT-BGDĐT (“통지16”)호의 발급으로 국민교육 시스템에 속하는 각 교육장에 지원에 대한 규정을 한다. 본 통지의 발효는 2018/09/18일 부터이고 교육,양성부의 2012/09/10일의 통지 제29/2012/TT-BGDĐT호를 대체해준다. 본 통지의 새로 주목된 점은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주고, 예: 건축공사으로 지원, 비물질지원의 형식을 포함한다. 통지내 교육에 지원규정을 지원 각 항목에 대한 법인소득세계산시 합리적 지급계산 목적으로 참고한다.

**4. 국내 판매상품의
입구VAT는 수출품의 VAT와
누계해서 환세신청의 불가능.**

국세청은 최근에 문서
제3842/TCT-KK호 2018
/10/09 일에 발급해서
수출생산활동에 대한
VAT환납규정을 한다.



기업은 국내판매활동과
동시에 상품수출활동이
있으면 국내에
vat납세금액이수출상품,
서비스의 입구vat와 보상된다.
만약 보상후 수출 상품,
서비스의 입구 vat의 금액이
3억동 이상 남으면 사업자는
그런 어치에 대한 환세로
신청할수있고 환세기준이
수출품, 서비스의10% 로
초과할수 없다. 기업은
국내판매상품의 입구 vat

금액과 외지방왕내
납세금의 다 공제로 되지
않는 발생경우에 기업은
아직 공제못된 세금을 수출
상품, 서비스의 입구 vat와
합해서 수출로 환세제기를
하면 안된다.

그러나, 기업은 국내
상품의vat세금을 다음 세금
계산기에 넘길수있다.

**5. 수출품을 만든 수입물건들을
국내기업에 상품을 인계해준
지정(제자리 수출)을 하게되면
수입원료의 면세 불가능.**

세관총국은 최근에 문서
5826/TCHQ-TXNK를
2018/10/05일에 수출생산용
상품수입물 에 대한 세금처리로
발급한다. 이런 문서에 따라,
국내기업의 생산물건들을 그후
제출기업에(공단내 불소속
하지만 수출입세법의 4조1항의
비세관구역의 규정만족되면)
출고판매해준 경우는 면세정책

수혜 (수출품 생산용
물건수입기업인경우에 적용)
를 받고 혹은, 원료수입 환세
(생산영업 목적의 수입물건의
납세를 했지만 수출품상품생
산에 사용하는 경우)를 받다.
그렇지만, 국내 제자리에
생산된 상품은 외국인에게
생산해준 국내기업의
상품으로 외국상인이
베트남에 다른기업에
납품지정을 하는 경우는
수출품생산용 원료,자재 수입
의 면세를 받을수 없다.

그러면, 기업은
수출품생산용
원자재수입면세를 받았고
그후에 외국상인의
지정으로 상품을 제자리
수출 형식의 수출하면
세관기관이 세금결정하고
규정처럼 지연납세와
행정위반처리를 한다.



6.기업은 할부구입 고객을 대신해서 차입이자의 지급항목에 대한 송장의 발급.

2018/06/12일, 세총국은 문서2331/TCT-DNL 로 고객의신용이자를 대신으로 지급해준 협력 파트너에 대한 송장발급정책을 안내한다. 구체로 문서에 근거하면 은행이 0% 할부 판매 프로그램의 진행기업과 협력계약 체결경우는 그때 기업이 은행에 고객(은행의 신용장주인이면서기업의 상품,

서비스 구입시 할인참가신고)대신으로 기업부터 할인 구입거래의 차입이자 한항목을 지급해주면 은행이 송장을 기업에 발급해줘 상기 차입이자 비용 결재의 근거로 가진다.

7.외국투자기업 ("FDI")은 자기로 생산된 상품을 소매로 판매할때 허가신청의의 면제.

2018/07/10일, 상공부는 문서5447/BCT-KH로 FDI기업의 직접생산된 상품의 소매환동 을 안내해준다. 상공부의 의견으로 베트남시장에 FDI기업의 등록된 투자제안의 생산품을 도매,

소매를 하는 작업이 FDI기업의 상품소화권한이고 정부의 의령서제 09/2018/NĐ-CP호의 조정 에 속하지 않다. .

그에 따라 FDI기업은 의령 제 09/2018/NĐ-CP호의 규정처럼 영업허가 후 소매장소 설립허가를 신청 진행한다.

그러나, 유조건 생산,영업에 속한 각 상품인경우엔 FDI기업이 전문분야법규의 규정에 대한 생산, 영업조건을 만족해준다.



8.Google/Facebook에 광고할때 공사계약자의 세금을 분리 납세해야한다.

세총국은 최근에 문서 제3149/TCT-CS호를 2018/08/15일로 Google/Facebook 에 광고할때 공사계약자의 세를 분리 납세해야 한다. 이런 문서의근거로, Google, Facebook (외국공사계약자)

는 베트남회사(베트남 측)와 계약을 해서 Google, Facebook 응용상 광고 서비스를 공급해주고 베남에 소득을 발생 되는 경우는 Google, Facebook 가 베트남에 공사계약자의 납세 (VAT,법인세)대상 에 속한다. 서비스비용을 결재하기전에 회사는 책임적으로 공사계약자세금 ,VAT와법인세를 법규로Google, Facebook을 대신으로 세금공제, 납세해준다.

생산 영업활동을 위한 Online광고비용은 회사의 세코트,이름,주소를 가진 합법의 송장; 증빙및 VAT의 법규 결재 증빙을 충분보유되면 회사의 법인세계산시 과세소득에 공제 된다. 주의로, 회사에 송장을 외국측의 공급이 없으면 회사가 결재근거로 공사계약자의 납세 신고와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9.외지방 왕내VAT 신고.

세충국은 문서 제3527/TCT-KK 호로 2018/09/18일에 외지방 건축활동의VAT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고 본사에 VAT전부를 신고하는 기업의 경우에 대한 질답을 한다.

그에 따라, 세충국은 기업과 외지방 왕내 건축활동 있는 기업관리세국과 지방세국에 기업의 아직 맞지않는 VAT신고를 통보해주고 동시에 기업이 건축활동 발생 지방에 납세해야할 왕내 VAT금액을 그러나 본사에 납세한것으로 옮겨납세해서 그지방의 VAT납세의무의 완료를 위한 기업의 제기문서를 요구하지만 그지방에 옮겨납세 해준 VAT금액이 본사에 납세 된VAT금액에 비해 더 크면 안된원칙을 보장한다2.

Contact

본소식통은오직참고목적으로만사용한다

고객님께서 조세,외국인의활동, 생산영업과정에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한 자문을 더 필요하시면 우리Grant Thornton 의 전문가들과하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객님은상기소식통을DOWNLOAD 을하고싶면우리의다음web에들어오셔서 검색해주시면된다
[Tax Hub](#)

Head Office in Hanoi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24 3850 1686
F + 84 24 3850 1688

Hoang Khoi
Tax Partner
National Head of Tax
D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2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Kaoru Okata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24 3850 1680
E kaoru.okata@vn.gt.com

Hiroshi Mitsushige
Manager – Japanese Desk
D +84 24 3850 1689
E hiroshi.mitsushige@vn.gt.com

Ho Chi Minh City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28 3910 9100
F + 84 28 3910 9101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84 2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Masato Karoji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28 3910 9135
E masato.karoji@vn.gt.com

Valerie – Teo Liang Tu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Nguyen Thu Phuong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7
E thuphuong.nguyen@vn.gt.com